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96
----------	-------

발의연월일 : 2026. 1. 13.

발 의 자 : 김현정 · 강준현 · 김남근
김용만 · 김문수 · 김 윤
박홍배 · 이정문 · 진성준
차지호 · 황명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회사와 그 회사의 업무집행자 등 관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회사 관계자의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가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의 10%에 불과하여 개인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 금융위원회에 있어 소액 과징금 부과사건까지 모두 금융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회계부정에 따른 부당이득 박탈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분식회계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소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5조 및 제38조제3항 신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후단 중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를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3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5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u>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u>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5조(과징금) ① ----- ----- ----- ----- ----- ----- ----- ----- ----- ----- ----- ----- ----- <u>100분의 20을</u> <u>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u>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u>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8조(업무의 위탁) ①·② (생략) <u><신설></u>	제38조(업무의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u>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 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u>
--	---